

#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규정

제정 1986. 11. 27

개정 1992. 8. 10

개정 2012. 10. 25

개정 2013. 10. 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하여 순천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25)

제2조(사업) 연구소는 사회과학에 관한 제반문제를 학술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며, 건전한 의식구조를 계도함으로써 대학과 국가사회의 발전 및 문화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연구
2. 국민윤리 및 사상·통일문제 등에 관한 제반 연구
3. 학술 심포지움 개최
4.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논문과 도서의 간행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조직) ① 연구소에 소장, 운영위원회, 간사를 둔다.

② 소장은 이 대학교 부교수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2012.10.25)

③ (삭제 2012.10.25)

④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소장을 보좌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의 2(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신설2012.10.25)

② 각 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위촉한다.(신설2012.10.25)

제4조(분과)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개 분과를 두며, 분과별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제1연구분과는 법률·행정·정치·경제분야
2. 제2연구분과는 교육·심리·사회·복지·언론분야
3. 제3연구분과는 철학·역사·국민윤리·사상분야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연구소의 겸임연구원 중 10명 내외를 소장이 임명한다.(개정2013.10.02.)

② 운영위원회는 제반 사업계획과 경과보고, 규정개정 및 기타 중요 업무는 심의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소장 또는 겸임연구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삭제2012.10.25)

제6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대학지원금, 각종 위탁연구비 및 기타 경비로 충당한다.

부 칙(1986. 11. 27.)

이 규정은 198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8.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